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김성회·최민희·이상식

모경종 • 전용기 • 이기헌

백혜련 · 김용만 · 김영환

김영진 · 최형두 · 김준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·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, 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.

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 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, 지원위원회의 설 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현 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

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,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,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령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8조).
- 마.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. (안 제10조)
- 바.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특례시와 도,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

-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사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·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・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자. 특례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청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 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특례시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.
 - 2. "도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도의 책무)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례시의 책무)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, 운영,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 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 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- 2. 행정·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

- 3.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
- 4.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
- 5. 그 밖에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령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 - 3. 특례시의 행정·재정자주권 제고, 사무처리 지원 및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

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관계 도지사, 관계 특례시장으로 한다.
-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
- 3.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)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무특례)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. 이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
- 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(도 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4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
- 5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
- 6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·기관별 정원의 책정
- 7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8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·징수
- 9.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

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,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, 같은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·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(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한정한다)의 부과·징수 업무

- 10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,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 및 제66조 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
- 11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[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(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)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]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
- 1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

회의 구성・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

- 1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, 제26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44조, 제46조, 제50조의3, 제52조의2, 제52조의3, 제53조,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·지정해제 및 개발·운영 등의 업무
- 14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심의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
- 15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, 30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
- 17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(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업무
- 18. 「의료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업무
- 19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업무
- 20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(支院) 설치 업무

- 21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및 「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 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명령 업무
- 22. 「주택법」 제7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업무
- 2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·변경 허가 및 신고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, 같은 법 제32조의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·운영,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, 같은 법 제33조, 제34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, 같은 법 제35조,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·징수·감면·조정·징수유예·분할납부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·변경허가 취소와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,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,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,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의 업무
- 2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
- 25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신고.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

사업자의 상호·명칭 등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,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도·감독,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,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,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등록 등의 공고,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

- 26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,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와 기초 자료 제출 요청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·운영 업무
- 27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·신고,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
- 28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
- 29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업무
- 30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·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와 허가·변경허가·변경신고수리 및 허가기간의 연장과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,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,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·변경신고의 취소 및 영업 정지명령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, 같은 법

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같은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·징수 업무

- 3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연 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
- 3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산림 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
- 33.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)·변경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협의(다만.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가.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 지의 전용
 - 나.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미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 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(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·지구·구역·단지·특구

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

- 라.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. 다만,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.
- 34. 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
- 35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21조 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및 승인취소,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의 업무
- 36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·변경허가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의 통지
- 37.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업무
- 38.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,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·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, 같은 법 제

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,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·합병의인가 및 공고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정지, 사업구역의 감소,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,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23조에 따라전기사업자등에게 행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 업무

- 39. 「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신청
- 40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요청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수립 협의 업무
- 41. 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
- 42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선정. 초광역권산업 선정하는 경우에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43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,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

제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사항 조치,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, 같은 법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원 부담,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조정, 같은 법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및 부담금 부과·징수·배분·사용 등에 관한 업무,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·조성 및 운영·관리업무

- 4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 조,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·운영·구 성 등의 업무
- 45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 치·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
- 46.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 조 및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·추진·지원 및 성과 분석 및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신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·시행 등의 업무
- 47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

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체 요청

- 48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취소, 공사의 중지·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 명령 등 감독 업무
- 49. 「하천법」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·변경 및 협의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·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인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관리 업무
- 50.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(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 대한 사방사업으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, 같은 법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·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·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와 이에 따른 손실 보상,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·사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 인한 수익의 교부 업무
- 5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

- 52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,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을 수반 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
- 53. 「농지법」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 업진흥지역의 변경·해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
- 54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
- 55. 「연안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
- 56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
- 57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
- 제11조(영향평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례시와 도 및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 및 특례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

한 행정・재정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의 행정・재정 운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·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·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지역균형발전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특례부여 및 지원) ① 특례시장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.
 - ③ 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도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관계 중앙행정기관, 도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수 있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9조를 삭제한다.